

이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-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
- ✓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도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
- ✓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조화·이체를 할 수 있게 되어 금융서비스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

금융위원회는 '25.11.19일부터 웹·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.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·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동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 상황을 점검하였다.

- (일시/장소) '25.11.19.(수) 9:30 /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고영업부 영업점
- (참석)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은행연합회장, 신한은행장, 그 외 시중은행·지방은행 부행장, 금융결제원장, 신용정보원장
- (주요내용) 오프라인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연 및 직원 격려

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은행 창구까지 확장하여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타 은행 계좌에 대해 조화·이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.

오픈뱅킹은 '19.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이다.

오픈뱅킹은 시행 후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하여 간편결제·송금,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.

※ 오픈뱅킹 순등록계좌: 258백만좌, 순이용자: 39백만명, 이용기관: 138개사('25.10월 기준)

금융 마이데이터는 '22.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 자산·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.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활용의 주체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본인으로 이동시켰으며, 개인의 데이터가 집적된 금융플랫폼으로서 대환대출, 맞춤형 상품 비교·추천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.

※ 마이데이터 가입자수: 1억 7,734만명(중복 포함), 데이터 전송 건수 11,430억건(누적)('25.10월 기준)

그러나,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·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공이 불가능했던 한계가 있었다. 이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,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핵심 원칙* 하에 제반 제도를 정비하고,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금일부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한다.

※ 핵심 원칙

- ① 은행권 과당 경쟁 방지
 - 금소법·신정법상 영업준칙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 제공 등
- ②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안
 - 은행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내부관리규정(은행영업점 직원 준수사항, 시스템 관리방안 등 포함) 마련, 전용 금융인증서(금결원) 개발해 신분증 제시만으로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
- ③ 은행 창구별 서비스 제공 편차 방지
 - 연 1회 이상 교육 등으로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업무를 숙지한 직원만 서비스 제공 가능 등

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첫째, 그동안 은행 영업점에서는 해당 은행(자행)의 계좌에 대해서만 조회, 이체 등이 가능해,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은 타행 계좌 거래 등을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했어야 했다.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·

마이데이터를 통해 타행 계좌에 대해서도 동일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,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.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, 오프라인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기대사례1.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(A씨)

- A씨(75세)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
- 예금, 연금, 카드내역 확인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존재
-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 창구에서 직원 안내를 통해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이용 가능
- 창구에서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통합·조회하고, 소비패턴 분석 및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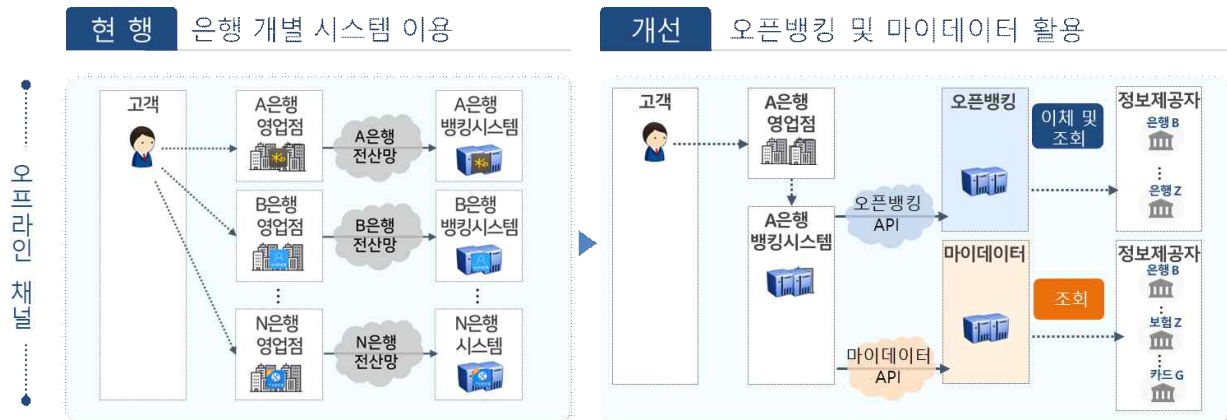
둘째, 이번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를 통해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은행 영업점이 축소*되는 상황에서, 근방에 있던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되는 경우, 해당 지역 거주자는 원거리를 이동해 주거래은행의 업무를 보았어야 했다.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를 통해 근방의 타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해 조회·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,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.

* 영업점 수(개): ('19) 6,709 → ('20) 6,405 → ('21) 6,094 → ('22) 5,800 → ('23) 5,733 → ('24) 5,625

기대사례2.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(B씨)

- B씨(52세)는 거주 지역의 A은행 지점이 폐쇄되어 은행업무를 위해 먼 시내까지 이동해야 함
- 스마트폰 인증 복잡성 등으로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
-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근 B은행 영업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
- 직원의 도움으로 타행(A은행 포함) 계좌를 통합 조회하고 이체까지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이용 가능
- 주거래은행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간 금융서비스 격차가 완화됨

<그림> 오프라인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대효과



마지막으로 권대영 부위원장은 “AI·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었으나,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”고 하며, 은행권에 “오프라인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여달라”고 당부하고, “동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, 금융위원회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주요 정책 홍보 및 안내 방안

- ① 은행권 공동 팸플렛·홍보영상을 제작하고, 팸플렛은 은행 창구·지자체 주민센터에 비치하고, 홍보영상은 정부 채널·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(전광판 옥외광고도 추진)
- ② 은행 점포폐쇄 관련 사전통지에 오프라인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를 통해 조회·이체를 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는 내용 포함
- ③ SNS·모바일 APP·홈페이지·영업점 등을 통한 은행권 자체 홍보

<총괄>	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선인 (02-2100-2530)
		담당자	사무관	최승희 (02-2100-2536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서나운 (02-2100-26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예빈 (02-2100-2622)
<공동>	금융결제원 디지털금융단	책임자	단 장	강인양 (02-531-1005)
		담당자	팀 장	이성준 (02-531-1860)
<공동>	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부	책임자	부 장	곽기열 (02-3705-5754)
		담당자	팀 장	이병호 (02-3705-5764)
<공동>	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	책임자	부 장	윤현진 (02-3705-5326)
		담당자	팀 장	최진웅 (02-3705-5218)

◆ बैं킹앱, 핀테크앱 외 은행 영업점에서도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1. 이용 대상 : 만 19세 이상 내국인

2. 이용 장소 : 전국 11개 은행 영업점에서 국내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가능(수협은행·산업은행·제주은행은 '26년 상반기 실시 예정)

-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기업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아이엠뱅크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

3. 이용 방법

- ① 실명확인증표(신분증)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
- ② 영업점 직원 안내에 따라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(이용약관 동의 및 이용계좌 등록)
 - 단, 방문한 은행에 수시입출금계좌(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)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좌 개설 후 서비스 가입 가능
- ③ 등록된 이용계좌(타행 본인계좌)에 대한 잔액조회 등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

4. 서비스 종류 : 잔액조회, 거래내역조회, 이체(채우기)*

- * 등록된 이용계좌의 자금을 방문한 은행에 개설된 수시입출금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

5. 서비스 계좌 : 수시입출금계좌, 정기성 예·적금계좌

- 이체(채우기)의 경우 수시입출금계좌만 이용 가능

6. 이용 시간 :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(평일 09:00 ~ 16:00)

- 운영시간이 달리 운영되는 탄력점포(관공서 소재 점포 등)의 경우
평일 07:00 ~ 18:00

7. 수수료 : 무 료

- 단, 오픈뱅킹 서비스에 이어지는 후속거래(채우기 후 현금인출 등)에
대해서는 방문한 은행 정책에 따른 수수료 발생 가능

8. 기대 효과

- **(고객편의성 향상)** 한 곳의 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 계좌를
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프라인 금융소비자의 서비스
이용 편의성 증대
- **(금융접근성 제고)**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, 도서산간지방 등
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 중인 금융소비자에 대한
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금융소외 문제 완화

◆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 외 은행 영업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해 금융자산을 통합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이용 대상 :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

2. 이용 장소 : 전국 8개 은행(마이데이터사업자)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가능

-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기업은행

3. 이용 방법

- ① 실명확인증표(신분증)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
- ② 영업점 직원 안내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
- ③ 동의한 고객에 한해 마이데이터 정보를 조회·활용한 ‘대면 상담 서비스’ 제공
 -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법령상 영업행위 규칙*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 제공
 - *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금지(신용정보법 시행령§18의6①6)

4. 서비스 종류 : 가입,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·조회*, 대면 상담

* 본인의 마이데이터 정보를 고객 본인만 전송요구·조회 하는 서비스(영업점 직원은 고객 마이데이터 정보 조회 불가)

- 계좌, 대출, 카드, 보험, 금융투자상품, 연금상품 등 전금융업권·회사에 흩어진 금융자산·거래내역 정보를 조회 가능

5. 이용 시간 :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(평일 09:00 ~ 16:00)

-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은 고객의 마이데이터 정보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접속 가능 시간을 영업시간으로 제한하여 운영

6. 수수료 : 무 료

- 단,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후속 대면 상담 서비스 등의 경우 방문한 은행 정책,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이용자의 일부 비용 부담 가능

7. 기대 효과

- (서비스 접근성 제고) 디지털 취약계층이 대면방식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오프라인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포용적 금융 달성에 기여